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

식품안전표시인증과

2019. 5. 17. ~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순서

1. 표시의 중요성



2. 식품표시광고법 개요



3. 식품표시광고법 주요내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고시)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
-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고시)



4. 처분 및 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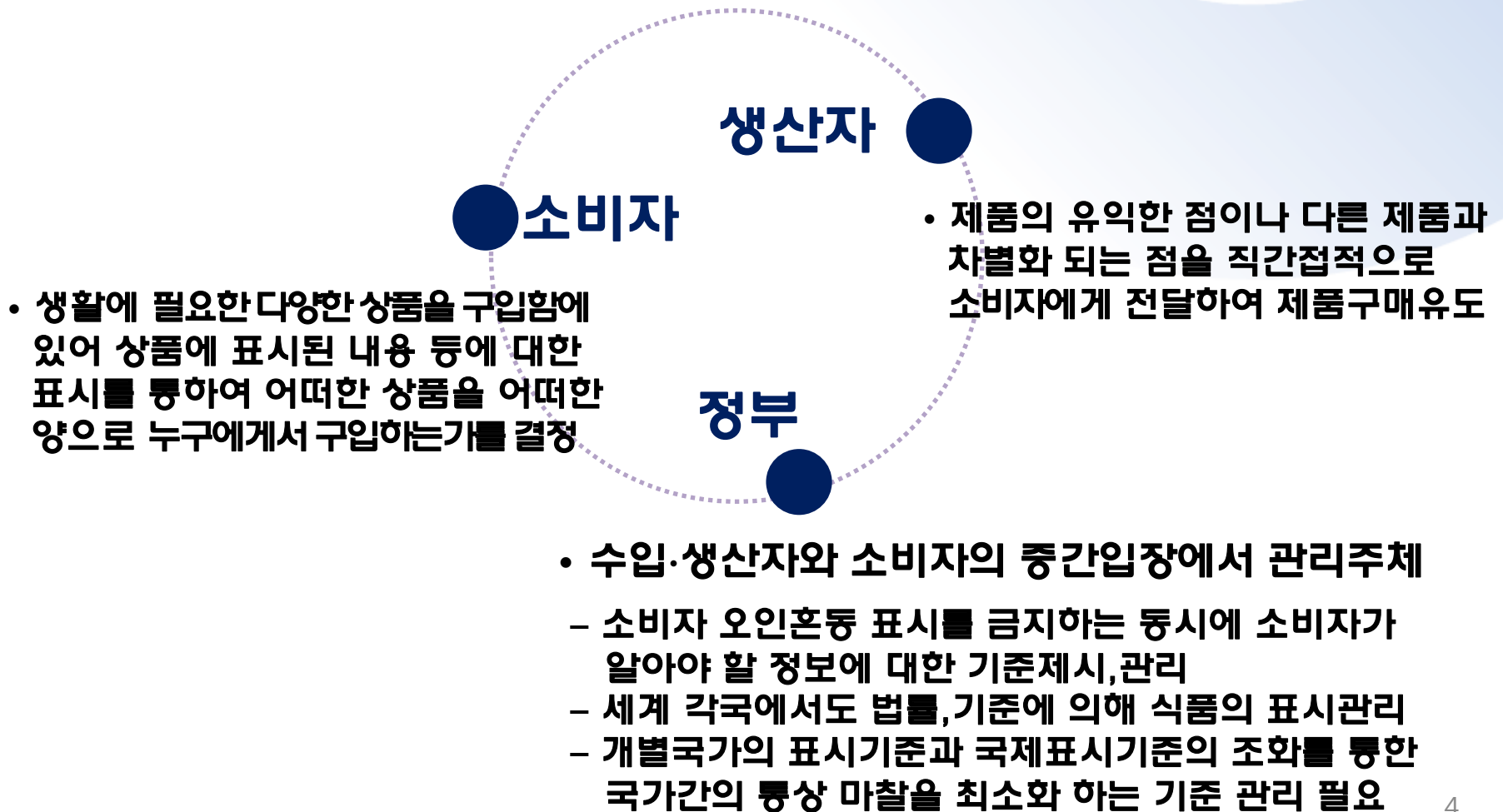
5.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표시의 중요성

➤ 식품 표시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



➤ 식품 표시의 중요성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적 수단

- 정보의 대칭성이 보장되면 소비자는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 구매

○ 식품표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비용보다 높음

- 표시제도로 인해 산업체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민건강, 의료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한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상당히 초과

○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수단 및 건전한 거래 확보 환경 조성

- 산업체는 제품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해당제품의 특징을 강조한 마케팅이 가능하며 허위·과대 표시를 배제하여 공정한 거래 확립 가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요

➤ 현황

식품표시제도는 3개 법령 및 7개 고시로 산재되어 운영

법령

고시

- 1) 식품위생법
- 2) 축산물 위생관리법
-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축산물의 표시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성(2)

소비자측면

○ 온라인 시장 성장 등에 따라 허위 표시·광고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상 경제상 피해 지속

- *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실적 : 658건(2016) → 341건(2017) → 474건(2018)
- * 온라인 표시광고 즉시 차단건수 : 16,431건(2016) → 32,406건(2017) → 35,647건(2018)

영업자측면

-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시로 운영
→ 잦은 고시 개정에 따른 영업자의 혼란
- 품목별(식품/축산물/건기식)로 관리하는 불편사항 발생
→ 품목별로 개정 시행시기를 구분하여 포장지 재고 등 관리

통합법 전후 비교(1)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제12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제12조의3(표시광고의 심의)
제12조의4(광고·심의 이의신청)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제16조의2(광고심의 이의신청)
제17조(표시기준)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제25조(표시기준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제5조(영양표시)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7조(광고의 기준)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통합법 전후 고시비교(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1.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 표시사항
 -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 식품등의 표시방법
 - 영양성분 표시방법
 - 식품별 표시기준
 -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기준 등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기준 및 방법
3.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4.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 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광고법

1.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 법 및 시행규칙으로 상향(내용 삭제)
 - 시행규칙으로 상향(내용 삭제)
 - 시행규칙으로 상향(내용 삭제)
 - 부당한 표시광고 범위 고시 제정(내용 삭제)
 - 식품등의 표시방법
 - 영양성분 표시방법
 - 식품별 표시기준
 -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기준 등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기준 및 방법(고시)
3.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고시)
4. 폐지(실증 범위에 포함)

통합법 전후 고시비교(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 5. 축산물의 표시기준
- 6. 소, 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구분기준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5.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폐지)
- 6. 소돼지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구분기준(고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7.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고시)
 - 표시방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기준 등
- 8.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고시)



- 7.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고시)
 - 표시방법
 - 일부 시행규칙으로 상향(폐닐알라닌 함유 표시 등)
 - 부당한 표시 · 광고 기준 고시 제정(내용 삭제)
 -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기준 등
- 3.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기준(고시)

신 설

<신 설>



- 8. 식품등의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고시)
- 9.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고시)

소비자

☑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 도모

- 실증 하지 못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중지 명령
- ⇒ 식품시장의 건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영업자

☑ 품목별 표시의 일관된 관리 가능

- 불필요한 관리 인력·경비 절감,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

기타

☑ 법령별 유사 동일 규정 개정으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해소 및 표시 정책의 일관성 제고

-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표시사항을 법률에 규정
- ⇒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집행 가능

법률 구성

제1조	목적	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2조	정의	제14조	시정명령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4조	표시의 기준	제16~19조	영업정지, 품목 등의 제조정지 등
제5조	영양표시	제20조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7조	광고의 기준	제22~24조	국고보조, 청문,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	표시 또는 광고내용의 실증	제26~29조	벌칙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30조	양벌 규정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31조	과태료
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법률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제1조(목적)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식품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
기구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포장을 포함)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

법률 주요 내용 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조(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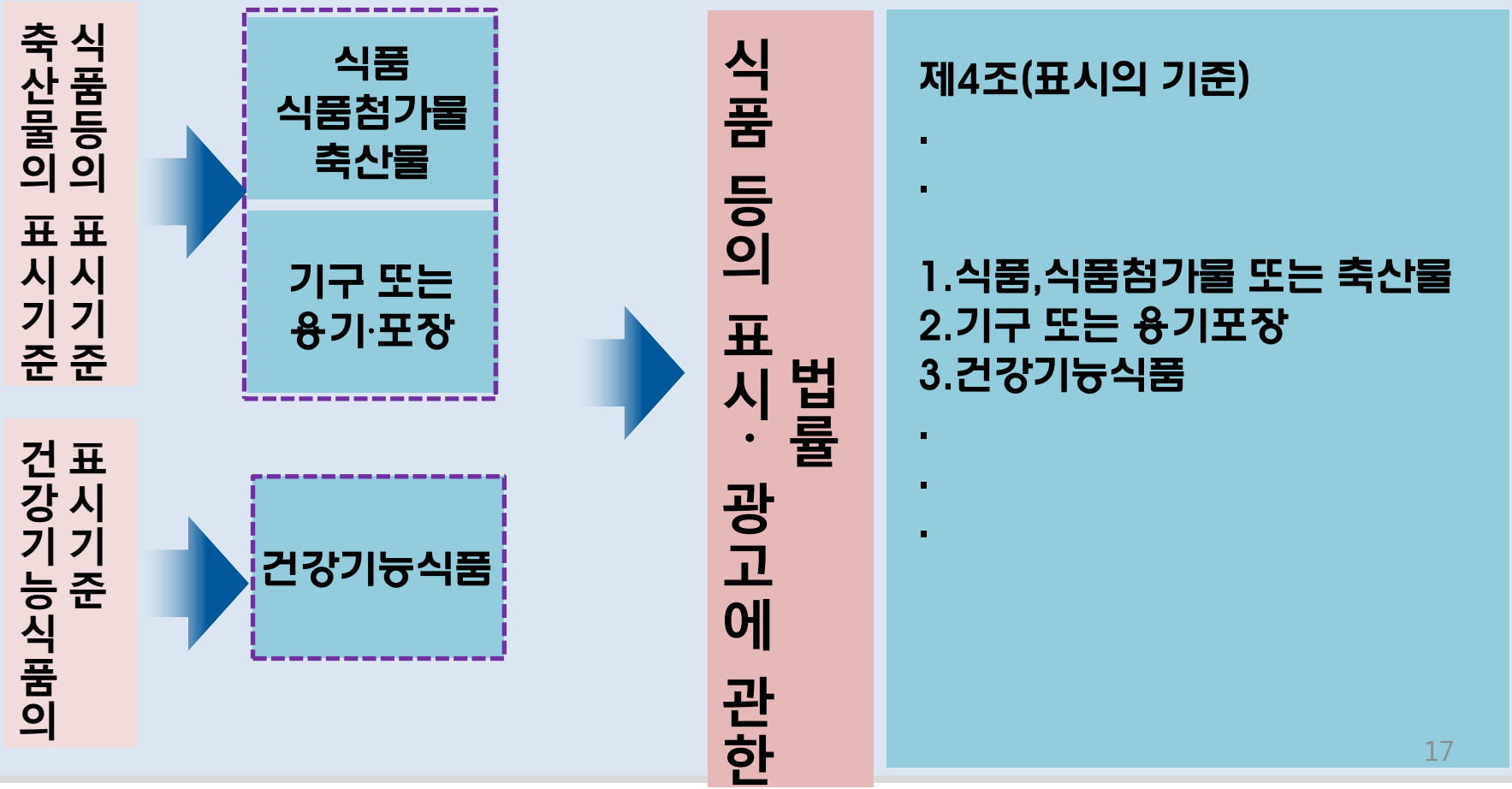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
표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
영양표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
광고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영업자	개별법(「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한 자 또는 허가 받은 자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1)

☑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표시대상을 통합
 → 표시대상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음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2)

☞ 세부 품목별 표시사항 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재질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3)

☑ 세부 품목별 표시사항 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4.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5.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6.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4)

☑ 표시사항 중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시행규칙 별표 1)

1. 자사제조용 수입제품

제품명, 제조업소명, 일자표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기능성 정보 등

2.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등

3. 식품등 제조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등

4. 바코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

5.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6.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부산물의 종류 등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5)

☑ 기타 -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 표시의무자(시행규칙 제4조)

- 영업자

식품등 (즉석)제조 · 가공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식품소분업자, 식용얼음판매업자, 도축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 비영업자

가축사육업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을 용기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 판매하는 자

기구를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시행규칙 별표 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고카페인 등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6)

☑ 표시방법 - (시행규칙 별표 3)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
2.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건강기능식품 제외)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
3.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
4.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5. 정보표시면에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글자 비율 5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7)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1)

1. 식품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2) 병과류,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4) 당류, 5) 잼류, 6) 두부류 또는 묵류, 7) 식용유지류, 8) 면류, 9) 음료류, 10) 특수용도식품
- 11) 장류, 12) 조미식품,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14) 주류, 15) 농산가공식품류, 16)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7) 알가공품류, 18) 유가공품, 19) 수산가공식품류, 20) 동물성가공식품류,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22) 즉석식품류, 23) 기타식품류
- 24) 식용란(수입식용란 포함), 25) 닭·오리의 식육, 26) 자연상태 식품

2. 식품첨가물

- 1) 식품첨가물, 2) 혼합제제류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4. 기구 또는 용기·포장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8)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2)

26) 자연상태 식품

가) 유형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

나) 표시사항

-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 (3)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 (4) 내용량
- (5)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 (6)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 (7)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
- (8) 기타표시사항
 -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시작 일시 표시하여야 함.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 표지판 사용 가능
 - 식품 중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해 비닐랩등으로 포장(진공포장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 생략 가능
 -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한글표시 생략 가능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9)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별지1)

제품명

- 1)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 흑마늘○○(흑마늘 ○○%)
 - 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 [예시]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 함량 ○○%)

제품명

나)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함

[예시] 과일○○[사과 ○○%, 배 ○○%]

다) 해당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의 함량 표시 하지 않을 수 있음

[식품유형명 사용 예시] ‘○○토마토케첩’ [식품유형:토마토케첩]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사용 예시] ‘○○햄버거’, ‘○○김밥’

[요리명 사용 예시] ‘수정과 ○○’, ‘식혜 ○○’, ‘불고기 ○○’

제품명

2)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식육의 종류(품종명 포함)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 또는 부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예시) 등심(50%), 목심(30%), 안심(20%)을 원료로 포장육 제조 시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심’ 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등심(50%), 목심(30%), 안심(20%)’를 주표시면에 14포인트로 표시

-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예시) 쇠고기와 돼지고기 혼합하여 포장육 제조시 제품명을 ‘우돈’ 이라고 할 경우
-> 주표시면에 ‘쇠고기 60%, 돼지고기40%와 같이 표시하여야 함

제품명

3)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나)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외

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 1) 유통기한 등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유통기한 등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글표시사항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2) 유통기한 등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축산물의 경우 해당온도 병행표시]**
- 3)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안됨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달걀 껍데기)

1) 산란일은 “△△○○[월일]” 의 방법으로 표시

*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가능

2) 고유번호는 5자리[알파벳과 숫자]로 표시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기재된 고유번호

3) 사육환경번호는 1자리[숫자]로 표시

* 1. 방사, 2. 축사내 평사, 3.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 기존 케이지(0.05㎡/마리)



원재료명

- 1)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함량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 가능]
 - 2)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과 그 추출물[또는 농축액]중에 함유된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다만, 고형분 함량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배합함량으로 표시 가능
- [예시] 딸기 추출물[또는 농축액]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 함량 ○○%)
- [예시] 딸기 바나나 추출물[또는 농축액] ○○%(고형분 함량 딸기 ○○%, 바나나 ○○% 또는 배합 함량 딸기 ○○%, 바나나 ○○%)

원재료명

- 3)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의 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모든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중복된 명칭은 한번만 표시할 수 있음
- 4)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모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중복된 명칭은 한번만 표시할 수 있음
[예시] 물, **설탕**, 식물성크림(야자수, **설탕**, 유화제), 혼합제제(**설탕**, 안식향산나트륨)
→ 물, **설탕**, 야자수, 유화제, 안식향산나트륨

원재료명(식육가공품)

5)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방법

-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서 서식에 기재한 원재료 또는 성분 배합 비율 표시
-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 표시 가능

[예시] 베이컨 원재료 배합비율: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

돼지고기 함량: $94\%(80/85 * 100)$

원재료명(어류 명칭 표시)

6) 어류의 명칭을 **제품명 및 원재료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포함)을 정하고 있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원료의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포함)을 사용하여야 함**

[예시1] 품명: **고등어**,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Chub mackerel, 학명: *Scomber japonicus*
⇒ **고등어**

[예시2] 품명: **대서양고등어**,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노르웨이고등어**, 학명: *Scomber scombrus*
⇒ **대서양고등어, 노르웨이고등어**

* 어류 명칭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19.3 ~ 9) 후 가이드라인 마련 · 배포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19)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식약처 공고 제2019-192호, 2019.4.10.)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안 고시 제2018-108호 부칙)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019.3.14.)에 따라 제2018-108호(2018.12.19.) 고시가 미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고시하는 날로 부칙 개정

2) 제2017-99호(2017.12.6., 2020.1.1. 시행), 제2018-9호(2018.2.23., 2020.1.1. 시행), 제2018-32호(2018.4.26. 2020.1.1. 시행), 제2018-108호(2018.12.19., 2022.1.1. 시행) 개정사항에 대한 유예기한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시행일로부터 2년 부여(2021.3.14)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20)

식품등의 표시기준 - 부칙 개정(안)

규정	고시일	기존 시행일	개정 시행일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주류 및 축산물의 경우 위탁생산제품 표시사항	'18.12.19.	'22.1.1.	
. 조리식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 “조리에” 등의 표시사항	식품 '18.4.26. 축산물 '18.12.19.	식품 '20.1.1. 축산물 '22.1.1.	
. 식용란 및 닭·오리의 표·단락 표시 및 표시사항의 활자크기에 관한 표시기준	'18.4.26.	'20.1.1.	
. 인삼열매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사항	'18.4.26.	'20.1.1.	
.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를 해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동업체 정보 표시사항	'18.12.19.	'22.1.1.	'21.3.14
. 과·채주스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해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동에 대한 표시방법 및 주의문구에 관한 표시사항	'18.12.19.	'22.1.1.	
. 메주의 대두함량의 표시사항	'18.4.26.	'20.1.1.	
.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문구에 관한 표시사항	'17.12.6	'20.1.1.	
. 효소식품의 α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 표시사항	'17.12.6	'20.1.1.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21)

규정	고시일	기존 시행일	개정 시행일
. 식육가공품의 식육함량 표시방법	'18.2.23.	'20.1.1.	
. 식육함유가공품의 “살균제품”, “멸균제품”, “비살균제품” 표시	'17.12.6.	'20.1.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식육함유가공품 제외)을 제도가공한 경우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	'18.12.19.	'22.1.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소시지류 충전시 사용된 케이싱에 관한 표시	'18.12.19.	'22.1.1.	
. 일함유가공품의 “살균제품”, “멸균제품”, “비살균제품” 표시	'17.12.6.	'20.1.1.	
.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 해동에 관한 표시	'18.2.23.	'20.1.1.	'21.3.14.
. 혼합제제류의 경우 구성하는 식품첨가물의 함량 표시	'17.12.6.	'20.1.1.	
. 제품명에 원재료 및 성분 통칭명을 사용한 경우 글씨크기에 관한 표시기준	식품 '18.4.26. 축산물 '18.12.19.	식품 '20.1.1. 축산물 '22.1.1.	
. 축산물 주표시면에 원재료명을 표시한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	'18.12.19.	'22.1.1.	
. 식품에 기계적 회수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기계발골육’ 등의 표시	'17.12.6.	'20.1.1.	
. [도3]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의 글씨크기에 관한 표시기준	'17.12.6.	'20.1.1.	

법률 주요 내용 제5조(영양표시)(1)

☑ 표시대상 식품, 영양성분, 표시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영양표시 대상 식품>

1. 레토르트식품(축산물 제외),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 · 아이스크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 즉석조리식품, 12. 장류,
13. 시리얼류, 14. 우유류 · 가공유류 · 발효유류 · 분유류 · 치즈류, 15. 햄류 · 소시지류,
16. 건강기능식품

<표시 대상 영양성분>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그 밖에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법률 주요 내용 제5조(영양표시)(2)

<표시방법>

- (공통사항) 영양성분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 * 단, 열량, 트랜스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는 제외
- (세부방법) 열량 산출기준 및 각 영양성분별 표시단위, 0표시기준 등

<강조표시기준>

- (함량강조표시) “저”, “무”, “고(또는 풍부)”, “함유(또는 급원)” 용어 사용 기준
- (비교강조표시) “덜”, “더”, “낮춘”, “줄인”, “강화”, “첨가” 용어 사용 기준

<허용오차>

- 영양성분별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120%미만 또는 80%이상이어야 함
 - * (120%미만)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 (80%이상)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법률 주요 내용 제5조(영양표시)(3)

영양성분표 주요내용

표시 영양성분 및 함량

: 함량단위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표시단위 사용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000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 영양성분 및 함량

: 해당 식품에 포함된 각 영양성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 양이 몇 %인가를 나타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에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정해 놓은 것

법률 주요 내용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1)

☑ 표시대상식품, 비교표시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함

<목적>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보호

<주요내용>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 기준에 따라 비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

<표시대상>

영양표시 의무대상 가공식품 중 소비량이 많고 나트륨 함량이 많은 식품

- ❖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
- ❖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법률 주요 내용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2)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고시)

○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 : 총 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

※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

: 비교 표시를 위해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해당 식품의 단위량

**현행 영양표시 기준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를
총 내용량으로 함**

*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 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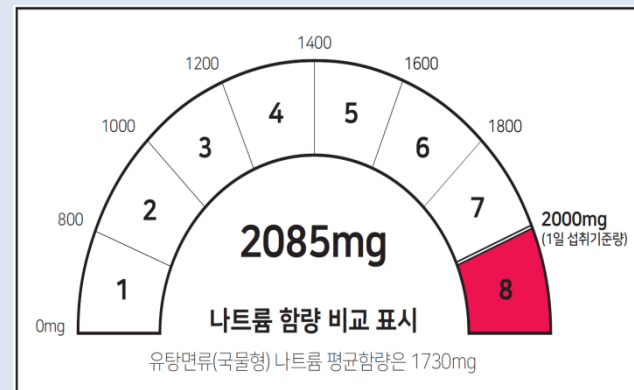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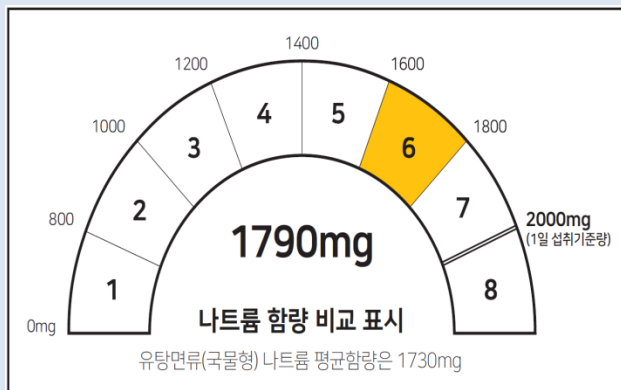
법률 주요 내용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3)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개선(식약처 고시 제2019-32호, 19.4.29)

나트륨 함량을 세부구간에 표시함

- 영양표시의 나트륨 함량을 황색[2000mg 이하] 또는 적색[2000mg 초과] 으로 8개 해당 구간에 표시
- [시행] **2022년 1월 1일** [선적용 가능]

<도안 예시(안)>



법률 주요 내용 제7조(광고의 기준)

☑ 광고의 기준

- 식품 등을 광고할 때는 제품명, 업소명을 반드시 포함
 - 수입식품의 경우 제품명, 생산(제조)국, 수입판매업소명
- 광고 시, 준수할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시행규칙 별표6>

-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등(조제유류 제외), 영·유아의 이유식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 광고 금지
- 조제유류에 관하여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 금지 등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광고 중지

법률 주요 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1)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개별법 시행규칙 →표시광고법률로 상향조정)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주요 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2)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항목 및 범위 규정(시행령)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

1.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 포함),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이력추적관리 표시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한정)

1.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 판매, 제조, 제공하는 식품
2. 영업등록 하지 아니하는 식품으로 위생상 위해 발생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식품 (예 : 자연상태의 식품)

법률 주요 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3)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광고(고시안)
- “체중감소”, “체지방감소”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고시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

-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T/F에서 논의)
- 다.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산부·수유부·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광고

법률 주요 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4)

✍️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안)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식품첨가물, 원재료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예시) 김치 또는 두부 제품에 “소브산 무첨가” 표시·광고
(예시) 보존료로 소브산은 사용가능하고, 안식향산은 사용이 불가능한 된장에 소브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존료 무첨가” 표시·광고
(예시)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표시·광고
(예시) 식품용 기구에 “DEHP Free” 표시·광고
2.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 이 없다는 표시·광고.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영·유아용 기구 제외)에 대한 “BPA Free”, “DBP Free”, “BBP Free” 표시·광고로 해당 인체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표시·광고는 제외

법률 주요 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5)

3.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예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표시·광고

(예시)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_2) 무첨가” 표시·광고(셀러리 분말과 발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_2 이온 생성)

4.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거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제1호자목5)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또는 ‘설탕 무첨가’ 표시·광고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

(예시)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표시·광고

법률 주요 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6)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예시)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
7.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광고
8.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9.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인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법률 주요 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7)

10.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광고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예시) “다른 ○○와 달리 이 ○○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 “다른 ○○와 달리 이 ○○은 △△△만을 사용합니다”

나.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예시) “최초” 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 ,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 “국내 판매 1위”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법률 주요 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8)

11.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 식품등의 용기·포장을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한 표시·광고(고시안)

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고시안)

(예시) “키스하고 싶어지는 캔디”, “만지고 싶은 젤리”

법률 주요 내용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1)

☑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 실증제?

-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해당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 실증자료 제출 요청
- 표시·광고를 한 자는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함

◆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식약처장은 임시적으로 그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 및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처분

법률 주요 내용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2)

☑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방안 (총리령)

실증자료의 범위

- ◆ 시험결과
- ◆ 조사결과
- ◆ 전문가(단체/기관) 견해
- ◆ 학술문헌
- ◆ 기타 식약처장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실증자료 제출 사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실증자료의 종류
- ◆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시험·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실증내용

* 그 밖에 실증자료의 요건은 식약처장이 고시

법률 주요 내용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3)

☑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고시안)

<실증자료의 일반적 요건>

실증자료의 내용은 식약처장이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

<시험결과의 요건>

- 시험기관은 식품등을 표시광고한 자와 독립적이어야 함
- 해당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 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조사결과의 요건>

-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 질문사항의 적정성, 질문사항의 적합성 등이 있어야 함

<전문가 견해의 요건>

-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에 따름

<학술문헌의 요건>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 SCI 및 SSCI등에 등록된 학술지

법률 주요 내용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1)

☑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 ◆ 식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 할 경우, **자율심의기구**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함



자율의 의미

- 행정청의 사후 규제가 있기 전 자율적으로 구성된 기관 등에서 심의를 받아 적법한 표시·광고

- ◆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법률 주요 내용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2)

기존의 운영방식(사전심의)

-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광고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12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사전심의 업무는 각 법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심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구분	심의건수('18)
건강기능식품	7,174
특수용도식품	2,387

법률 주요 내용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3)

☑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 의미

- 현행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 위헌 결정('18.6.28)
 -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에 대해 허위광고로 보거나 그 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부과를 무효화
 - ☞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표현의 자유 침해
 - ▶ 사전 광고심의(16조)에 대한 결정주문은 없으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만큼 사실상 무효화(자문 변호사 의견)
- 따라서 **자율심의 기구를 통한 사전심의로 위헌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 보호**

법률 주요 내용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4)

☑ 자율심의기구 관리 - '등록제'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 기관 또는 단체>

- ◆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 ◆ 「식품위생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단체 설립)에 따라 설립된 단체
 -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 등록 요건 : 심의위원회 구성,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인력(식품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포함), 전산장비와 사무실
- * 부실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요건 등 마련

법률 주요 내용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율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위원회 구성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1. 식품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 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산업계는 1/3 미만이어야 함

법률 주요 내용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심의
- 개별법에 따른 법정위원회 자문도 가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식품표시의 중요성에 비해 소비자 이해도 및 활용도가 낮아 교육홍보 필요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위탁 가능 기관

- 동업자조합, 소비자단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 구체적인 교육·홍보 내용(총리령)

-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영양표시에 관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비자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처분 및 벌칙 등

법률 주요 내용 제14조(시정명령)

☑ 시정명령 대상

-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제4조(표시의 기준)제3항,제5조(영양표시)제3항,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3항)
- ▶ 제7조(광고의 기준)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 제8조제1항(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법 제8조제1항

-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광고
- ◆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 제9조제3항(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률 주요 내용

제15조(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대상

위반사항

- 1)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4조제3항)
-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제8조제1항)

- ▶ 영업자는 회수 또는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관할관청에 보고)를 취함
- ▶ 관계 공무원은 그 식품 등을 압류, 폐기 등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함
- ▶ 식품 등의 회수, 압류·폐기처분의 기준 및 절차는 「식품위생법」 준용
 - 회수대상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는 식품등

법률 주요 내용 제16조(영업정지 등)

☑ 영업정지 등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취소

- 1)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4조제3항)
-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제8조제1항)
- 3) 시정명령 위반(제14조)
- 4) 회수 미실시, 회수보고 미실시, 거짓보고(제15조제1항 및 제2항)
- 5) 압류, 회수, 폐기명령 미이행(제15조제3항)

▶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영업자가 영업정지를 위반하여 계속 영업 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에서 규정

법률 주요 내용 제17조~제19조

☑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 6개월 이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 1)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4조제3항)
-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제8조제1항)

▶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

☑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양수인, 상속인 등에게 승계

☑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을 같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단, 미표시 또는 표시위반(제4조제3항),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제8조제1항)를 위반하여 제16조(영업정지),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법률 주요 내용

제20조~제21조

☑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제8조제1항~제3항)하여 제16조(영업정지)제1항~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 판매한 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 ▶ 제15조~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처분내용, 영업소, 식품 등의 명칭 등 관련 영업정보 공표
- ▶ 공표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법률 주요 내용

제22조~제24조

☑ 제22조(국고 보조)

- ▶ 식약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제23조(청문)

- ▶ 자율심의기구 등록취소,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시

☑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 식약처장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 ▶ 식약처장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법률 주요 내용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회 위원 = 공무원

< 「형법」 제129조~제132조까지 규정 적용 >

제129조(수뢰,사선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또는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26조(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자(법 제8조제1항제1호~제3호까지)

-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법률 주요 내용 제26조~제29조(벌칙)

☑ 제27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1)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4조제3항)
-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자 (제8조제4항~제9호)

-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광고
-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3) 회수 또는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제15조제1항)
- 4) 회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5조제3항)
- 5)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받은 자, 영업신고를 한 자가 영업정지 명령 위반, 계속 영업한 자
- 6) 식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정지 명령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법률 주요 내용

제26조~제29조(벌칙)

☑ 제28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건강기능식품은 제외)

*건강기능식품은 제27조(벌칙)적용

- 2) 품목(류) 제조정지 위반 등

☑ 제29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표시광고에 있어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계속 표시광고 한 자(징역, 벌금 병과 가능)

- 2) 회수계획 미보고, 허위보고 한 자

법률 주요 내용

제30조~제31조

☑ 제30조(양벌규정)

- ▶ 제26조~제29조(벌칙) 관련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31조(과태료)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영양표시 위반
- 2)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위반
- 3) 광고의 기준을 위반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과태료는 시행규칙에 따라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부과·징수

법률 주요 내용 부칙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5483호, 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식품등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622호,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총리령 제1535호, 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중 조제유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표시대상>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 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 승인품목(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표시면제대상>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중 1개 서류로 증빙필요

▶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표시방법>

▶ 유전자변형식품

- ①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유전자변형00포함식품”, “유전자변형00포함식품첨가물” 또는 “유전자변형00포함건강기능식품”
- ② 원재료명 바로 옆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00”
- ③ 단, 유전자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00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 ① 유전자변형 00(농축수산물 품목명), 유전자변형 00(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00(채소명)
- ② 유전자변형 00(농축수산물 품목명) 포함 또는 포함가능성 있음, 유전자변형 00(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00(채소명) 포함 또는 포함가능성 있음

감사합니다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 보호조치 요구 방법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전화 044-200-7773/팩스 044-200-7949